|  |  |  |
| --- | --- | --- |
|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48호<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 <비(非)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5]27호),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처리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59호) 및 <기업 구조조정의 기업소득세 처리 관련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4]109호)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 관련 몇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정의 유형별로 기업 구조조정의 각 당사자라 함은:(1) 사자라 함은 채무자, 채권자를 지칭한다.(2) 지분인수의 각 당사자라 함은 양수인, 양도인 및 인수대상기업을 지칭한다.(3) 자산인수의 각 당사자라 함은 양수인, 양도인을 지칭한다.(4) 합병의 각 당사자라 함은 합병기업, 합병대상기업 및 합병대상기업의 주주를 지칭한다. (5) 분할의 각 당사자라 함은 분할기업, 분할대상기업 및 분할대상기업의 주주를 지칭한다.위의 구조조정 거래 중 지분인수 거래의 양도인, 합병 거래의 합병대상기업의 주주 및 분할 거래의 분할대상기업의 주주는 자연인일 수 있다.각 당사자들 중의 자연인은 개인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진행한다.2. 구조조정의 각 당사자 기업이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구조조정 업무가 재세[2009]59호문건과 재세[2014]109호 문건의 제1조, 제2조에 규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며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를 지칭함. 아래도 이와 동일함.)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구조조정 주도측을 확정해야 한다.(1) 채무구조정의 경우 채무자를 주도측으로 한다.(2) 지분인수의 경우 지분 양도인을 주도측으로 하되 지분 양도인이 두명 또는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인수대상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양도하는 양도인을 주도측으로 한다(양도하는 지분 비율이 동일한 경우 협상을 통하여 주도측을 확정할 수 있다.). (3) 자산인수의 경우 자산 양도인을 주도측으로 한다.(4) 합병의 경우 합병대상기업을 주도측으로 하되 동일 통제인의 통제를 받는 여러개의 대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일방 당사자를 주도측으로 한다.(5) 분할의 경우 분할대상기업을 주도측으로 한다.3. 재세[2009]59호 문건 제11조에서의 구조조정 업무 완성연도라 함은 구조조정일이 소속된 기업소득세 납세연도를 지칭한다.기업 구조조정일의 확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채무구조정의 경우 채무구조조정계약(협약) 또는 법원 재정서의 효력발생일을 구조조정일로 한다.(2) 지분인수의 경우 지분양수도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였고 지분변경 수속이 완성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관련기업간 지분인수 시 지분양수도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후 12개월 내에 지분변경 수속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지분양수도계약(협약) 효력발생일을 구조조정일로 해야 한다.(3) 자산인수의 경우 자산양수도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4)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공상 신설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완성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 신설등기 또는 변경등기가 필요없는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 (5) 분할의 경우 분할계약(협약)이 효력을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이미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공상 신설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완성한 일자를 구조조정일로 한다.4.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재세[2009]59호 문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기업이 단순하게 기타 법률형식으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조정 각 당사자는 당해 구조조정 업무 완성연도에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 시 각각의 관할 세무기관에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별표>(첨부 1 참조)와 신고자료(첨부 2 참조)를 제출해야 한다. 합병, 분할의 일방 당사자가 말소되는 경우 세무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구조조정 주도측이 신고한 이후 기타 당사자가 그 관할 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한다. 신고 시 구조조정 주도측이 제출하여 그 관할 세무기관에 의해 접수된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별표>(복사본)도 제출해야 한다.5.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기업 구조조정에 합리적인 상업목적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1) 구조조정 거래의 방식;(2) 구조조정 거래의 실질적 결과;(3) 구조조정 각 당사자의 세무상황 변화;(4) 구조조정 각 당사자의 재무상황 변화;(5) 비거주민기업의 구조조정 활동 참여 상황.6. 기업 구조조정 업무에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신고 시 각 당사자는 구조조정 전 연속 12개월 내에 당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타 지분·자산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설명을 관할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거래와 당해 구조조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동일 거래를 구성하는지 여부, 하나의 구조조정 업무로 간주하여 처리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7. 재세[2009]59호 문건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구조조정 업무가 연속적인 12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거래되고 두개의 납세연도에 걸쳐 진행되며 각 당사자가 첫번째 납세연도의 거래 완성 시점에 전체 거래가 특수성 세무처리 조건에 부합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합의를 거쳐 특수성 세무처리를 선택한 경우 잠정적으로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 시 서면 신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그 다음 납세연도에 전체 거래가 완성된 후 기업은 특수성 세무처리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이 공고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납세연도의 기업소득세 연도 확정신고표를 조정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해야 한다.8. 기업에게 재세[2009]59호 문건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채무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 채무구조조정 소득 확인금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시 당해 연도의 확인금액 및 연도별 이월금액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관할 세무기관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업이 매년 신고하는 채무구조조정 소득에 대한 대조 분석을 실시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9. 기업에게 재세[2009]59호 문건 제7조 제(3)항에 규정한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민기업은 자산 또는 지분 양도수익 확인총액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해당 연도의 기업소득세 정산 시 당해 연도의 확인금액 및 연도별 이월금액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관할 세무기관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거주민기업이 취득한 지분의 과세기준과 매년 확인하는 자산 또는 지분 양도수익에 대한 대조 분석을 실시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0.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한 기업이 이후 연도에 구조조정 자산(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연도 납세신고 시 특수성 세무처리 시 확정한 구조조정 자산(지분)의 과세기준과 양도 또는 처분 시의 과세기준의 대조 상황 및 이연소득세 부채의 처리 상황 등을 포함한 자산(지분)양도 소득 또는 손실 상황에 대한 특별 설명을 해야 한다.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한 기업이 이후 연도에 구조조정 자산(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평가와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특수성 세무처리 시 확정한 구조조정 자산(지분)의 과세기준과 양도 또는 처분 시의 과세기준 및 관련 연도납세신고표를 대조확인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11. 세무기관은 특수성 세무처리를 적용하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통계와 관련 자료의 파일링 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은 매년 8월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통계표>(첨부 3 참조)를 세무총국(소득세사)에 보고해야 한다.12. 이 공고는 2015연도 및 그 이후 연도의 기업소득세 정산에 적용된다. <<기업 구조조정 업무 기업소득세 관리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0년 제4호)의 제3조, 제7조,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32조는 동시에 폐지한다.이 공고가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이미 구조조정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구조조정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첨부: 1.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보고표 및 별표<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7.xls>2.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신고자료 일람표<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8.xls>3. 기업 구조조정 소득세 특수성 세무처리 통계표<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9.xls>　　국가세무총국2015년 6월 24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征收管理若干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48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国务院关于取消非行政许可审批事项的决定》（国发〔2015〕27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处理若干问题的通知》（财税〔2009〕59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促进企业重组有关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通知》（财税〔2014〕109号）等有关规定，现对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征收管理若干问题公告如下： 　　一、按照重组类型，企业重组的当事各方是指：　　（一）债务重组中当事各方，指债务人、债权人。　　（二）股权收购中当事各方，指收购方、转让方及被收购企业。　　（三）资产收购中当事各方，指收购方、转让方。　　（四）合并中当事各方，指合并企业、被合并企业及被合并企业股东。　　（五）分立中当事各方，指分立企业、被分立企业及被分立企业股东。　　上述重组交易中，股权收购中转让方、合并中被合并企业股东和分立中被分立企业股东，可以是自然人。　　当事各方中的自然人应按个人所得税的相关规定进行税务处理。　　二、重组当事各方企业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指重组业务符合财税〔2009〕59号文件和财税〔2014〕109号文件第一条、第二条规定条件并选择特殊性税务处理的，下同），应按如下规定确定重组主导方：　　（一）债务重组，主导方为债务人。　　（二）股权收购，主导方为股权转让方，涉及两个或两个以上股权转让方，由转让被收购企业股权比例最大的一方作为主导方（转让股权比例相同的可协商确定主导方）。　　（三）资产收购，主导方为资产转让方。　　（四）合并，主导方为被合并企业，涉及同一控制下多家被合并企业的，以净资产最大的一方为主导方。　　（五）分立，主导方为被分立企业。　　三、财税〔2009〕59号文件第十一条所称重组业务完成当年，是指重组日所属的企业所得税纳税年度。　　企业重组日的确定，按以下规定处理：　　1.债务重组，以债务重组合同（协议）或法院裁定书生效日为重组日。　　2.股权收购，以转让合同（协议）生效且完成股权变更手续日为重组日。关联企业之间发生股权收购，转让合同（协议）生效后12个月内尚未完成股权变更手续的，应以转让合同（协议）生效日为重组日。　　3.资产收购，以转让合同（协议）生效且当事各方已进行会计处理的日期为重组日。　　4.合并，以合并合同（协议）生效、当事各方已进行会计处理且完成工商新设登记或变更登记日为重组日。按规定不需要办理工商新设或变更登记的合并，以合并合同（协议）生效且当事各方已进行会计处理的日期为重组日。　　5.分立，以分立合同（协议）生效、当事各方已进行会计处理且完成工商新设登记或变更登记日为重组日。　　四、企业重组业务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除财税〔2009〕59号文件第四条第（一）项所称企业发生其他法律形式简单改变情形外，重组各方应在该重组业务完成当年，办理企业所得税年度申报时，分别向各自主管税务机关报送《企业重组所得税特殊性税务处理报告表及附表》（详见附件1）和申报资料（详见附件2）。合并、分立中重组一方涉及注销的，应在尚未办理注销税务登记手续前进行申报。　　重组主导方申报后，其他当事方向其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申报时还应附送重组主导方经主管税务机关受理的《企业重组所得税特殊性税务处理报告表及附表》（复印件）。　　五、企业重组业务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申报时，应从以下方面逐条说明企业重组具有合理的商业目的：　　（一）重组交易的方式；　　（二）重组交易的实质结果；　　（三）重组各方涉及的税务状况变化；　　（四）重组各方涉及的财务状况变化；　　（五）非居民企业参与重组活动的情况。　　六、企业重组业务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申报时，当事各方还应向主管税务机关提交重组前连续12个月内有无与该重组相关的其他股权、资产交易情况的说明，并说明这些交易与该重组是否构成分步交易，是否作为一项企业重组业务进行处理。　　七、根据财税〔2009〕59号文件第十条规定，若同一项重组业务涉及在连续12个月内分步交易，且跨两个纳税年度，当事各方在首个纳税年度交易完成时预计整个交易符合特殊性税务处理条件，经协商一致选择特殊性税务处理的，可以暂时适用特殊性税务处理，并在当年企业所得税年度申报时提交书面申报资料。　　在下一纳税年度全部交易完成后，企业应判断是否适用特殊性税务处理。如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当事各方应按本公告要求申报相关资料；如适用一般性税务处理的，应调整相应纳税年度的企业所得税年度申报表，计算缴纳企业所得税。　　八、企业发生财税〔2009〕59号文件第六条第（一）项规定的债务重组，应准确记录应予确认的债务重组所得，并在相应年度的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对当年确认额及分年结转额的情况做出说明。　　主管税务机关应建立台账，对企业每年申报的债务重组所得与台账进行比对分析，加强后续管理。　　九、企业发生财税〔2009〕59号文件第七条第（三）项规定的重组，居民企业应准确记录应予确认的资产或股权转让收益总额，并在相应年度的企业所得税汇算清缴时对当年确认额及分年结转额的情况做出说明。　　主管税务机关应建立台账，对居民企业取得股权的计税基础和每年确认的资产或股权转让收益进行比对分析，加强后续管理。　　十、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企业，在以后年度转让或处置重组资产（股权）时，应在年度纳税申报时对资产（股权）转让所得或损失情况进行专项说明，包括特殊性税务处理时确定的重组资产（股权）计税基础与转让或处置时的计税基础的比对情况，以及递延所得税负债的处理情况等。　　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企业，在以后年度转让或处置重组资产（股权）时，主管税务机关应加强评估和检查，将企业特殊性税务处理时确定的重组资产（股权）计税基础与转让或处置时的计税基础及相关的年度纳税申报表比对，发现问题的，应依法进行调整。　　十一、税务机关应对适用特殊性税务处理的企业重组做好统计和相关资料的归档工作。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应于每年8月底前将《企业重组所得税特殊性税务处理统计表》（详见附件3）上报税务总局（所得税司）。　　十二、本公告适用于2015年度及以后年度企业所得税汇算清缴。《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企业重组业务企业所得税管理办法〉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0年第4号）第三条、第七条、第八条、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第二十四条、第二十五条、第二十七条、第三十二条同时废止。　　本公告施行时企业已经签订重组协议，但尚未完成重组的，按本公告执行。特此公告。附件：1.企业重组所得税特殊性税务处理报告表及附表<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7.xls>　　2.企业重组所得税特殊性税务处理申报资料一览表<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8.xls>　　3.企业重组所得税特殊性税务处理统计表<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712189/part/1712209.xls>　　国家税务总局2015年6月24日 |